

현안분석 2007-

문화콘텐츠관련 기금의 현황과 법적 과제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III)

최 병 규 · 한 정 미



문화콘텐츠관련 기금의 현황과 법적 과제

The current situation of fund about culture contents and legal issues in korea

Choi, Byeong Gyu

Han, Jung Mi

연구책임자 : 최병규(건국대학교)

2007. 9.

한정미(한국법제연



국문 요약

오늘날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게 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문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설치 근거법, 집행기관, 기금조성방법, 운용방법, 지원대상 등에서 분야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재원운영에 대한 투명화와 적정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의 범위에 용자사업과 투자사업까지 포함되고 있어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사후평가제도의 정비요구가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분야의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고, 문화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금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바, 바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존의 제도의 변천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평가를 한 결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별도의 재원이 없고 기금성과도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모태조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신설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 6월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출범

시켰다. 모태펀드는 성과가 뛰어난 개별 벤처캐피털을 선정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에 투자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회수를 위해 개별 창업투자회사와 협력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과연 모태펀드가 자금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적합성과 높은 회수율이 생명이다. 따라서 투자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기금법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문화콘텐츠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저변이 마련되어야 하고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그 가치평가를 통한 담보대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산업기업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경영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향상, 제도 개선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IT강국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ircumstances fund of culture industries fac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field of government assistance about culture contents is to acquire culture contents that can be marketed. To do this, the government should have programs to search for superior arts contents. By searching for superior arts contents at the stage of ideas, double investment may be evaded and the government may provide assistance to choosing marketable culture contents and to give financial support. In Korea the assistance about culture contents is transformed to fund of fund at the end of the year 2006.

In order to recommend government's policy toward fund of culture industries, this paper traces how superior culture contents are acquired, administered and enforced in domestic companies. This paper focuses upon financial assistance about culture contents right and measures to assist culture contents industries. Based upon these analyses, this paper is going to recommend some policy advi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n the future. One of support of culture industries is the loan assistance by banks etc. The appropriate valuation of culture contents is very important for such a financial support.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especially the contents of culture and arts can be associated with the core of small-enterprise-IP-strategy that is attributed to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to assisting in the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ree methods(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are useful in deriving royalty rates at which the subject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licensed. Specifically, a company lacking intangible assets and technology would be reduced to operating a commodity-oriented enterprise where competition and lack of product distinction would severely limit the potential for profits. The three approaches(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Although we believe that these approaches are universal in nature, and that they ought to be applicable in any property situation anywhere in the world, we must recognize that there may be legal, economic, and practical restraints to applying them in precisely the way.

cost approach One might think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st approach from country to country would be quite uniform, but individual factors can affect its application. One of the practical matters that has to be addressed is the availability of the subject property in the country in question. We have become accustomed to assuming that almost any kind of property would be readily available and are not used to thing in terms of substantial delays that might be experienced in the replacement cost element.

market approach Of the three standard valuation approaches, the market approach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to apply internationally, especiall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or those that are emerging from state-controlled economies. Markets may be very thin, with very few transactions. There may be no real sales because of legal or political restrictions.

income approach The ingredients for the income approach are universal(the amount of income, the duration of income, and the risk of achieving it). But our ability to apply this approach may vary considerab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 uncertainty relates to accounting standards and so on. The world of commerce is imploding. Despite all of the business communication problems noted, process

continues. We are of the opin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will continue to be the focus of the exports and imports. By the way we should solve the valuation problem ra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financial support by the new system of fund of fund.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supervise the use of government fund strictly.

※

keywords : culture contents, fund of culture, financial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supervise the use of government fund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 연구의 목적	13
. 연구의 범위	13
제 2 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 ^{II} 의 역사적 변천과 정부정책	15
. 역사적 변천	15
1.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개황	15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운용 성과	18
3.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 논의	19
4.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I 대안 : 『모태펀드』 전환	20
5. 기금평가결과	22
6. 모태조합 문화계정 출자분 투자 진행상황	25
7. 현황 및 향후 전망	26
. 정부의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정책 방향	27
1. 투자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28
2. 문화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29
3.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 집중 지원	29

제 3 장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콘텐츠기금조성의 현황	33
. 모태펀드의 의의	33
1. 모태펀드의 개념	33
2. 조성 배경	36
3. 추진 경위	36
. 모태펀드 운용 현황	37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37
2. 문화산업기금의 모태펀드 출자	40
II	
제 4 장 문화콘텐츠사업의 세계동향 및 금융지원 방안	43
. 주요 국가별 권역별 문화산업 현황	43
. 세계 문화산업 관련 주요 기업의 동향	45
.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행태	48
. 콘텐츠가치의 담보화 방안	49
1.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법적 근거	49
II	
2.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현황	51
III	
3.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방법	56
4.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59
IV	
5.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방안으로서 고려 대안	62
6. 단기적 활성화 방안	64
7.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67
8. 지적재산권담보의 문제점	69
9. 활성화 방안	69
10. 제 언	70

제 5 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 국가예산과 모태펀드 현황	73
.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1. 융자사업 중단의 문제점과 개선	76
2. 시장원리의 문제점과 개선	76
3.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와 개선	78
4.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78
5. 문화콘텐츠 담보대출의 활성화	79
제 6 장 결 론	81
참 고 문 헌	83

제 1 장 서 론

. 연구의 목적

사회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관련 기금은 설치근거법, 집행기관, 기금조성방법, 운용방법, 지원대상 등에서 분야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재원운영에 대한 투명화와 적정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의 범위에 용자사업과 투자사업까지 포함되고 있어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사후평가제도의 정비요구가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분야의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고, 문화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금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1999년 2월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 운용 하였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사업은 용자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의 용자사업위주의 운용에서 2000년부터 투자사업의 폭을 확대하¹⁾ 있다. 기금의 지원으로 문화산업의 개발지원,

유통구조의 현대화, 제작비 용자, 기타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운용상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문화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의 운용상의 적정화 및 투명화가 요구되며, 기금의 운용에 따른 문화산업발전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제도의 현실화방안이 필요하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적인 성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모태펀드 방식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산업기금의 제도·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문화산업기업의 금융조달방안으로서 콘텐츠담보가치평가와 자금조달방안도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서 결말을 맺는다.

제 2 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의 역사적 변천과 정부정책

역사적 변천

2006년 4월 28일 법률 개정(법률 제7940호)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고,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게 되었다(동법 부칙). 정부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조합 내에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이곳에서는 특히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연혁, 운용성과, 그 폐지 관련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개황

(1) 목적 및 상황

문화상품 개발,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

(2) 기금의 상황

과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조성 현황	54,922	66,111	57,989	43,822	42,182	9,378	274,404
투융자 현황	7,360	29,570	49,910	67,260	29,060	39,030	222,190
투 자	-	5,000	15,000	29,500	-	5,000	54,500
융 자	7,360	24,570	34,910	34,910	29,060	34,030	167,690

(3) 투자상황(2006년말 기준)¹⁾

구분	주간사	결성규모	정부 투자액	투자액	투자 실적율	주요 투자분야	설립일	비고
문화 콘텐츠 2호	한국 기술투자	108억	30억	129.3억	119.8%	인터 넷/ 모바일 50%	2001. 11.15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문화 콘텐츠 3호	안솔 창업투자	100억	30억	100.4억	100.4%	콘텐츠 유통/배급 45%	2005. 11.17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문화 콘텐츠 1호	IMM 창업투자	123억	30억	169.7억	138.0%	애니/만화/캐릭터 50%	2001. 12.31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Sky life 콘텐츠	IT 벤처투자	30억 (200억)	10억	34.8억	116.0%	방송용 애니메이션	2001. 12.31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1) 문화관광부, 2006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결산보고서.

구분	주관사	결성규모	정부 투자액	투자액	투자 실적율	주요 투자분야	설립일	비고
게임2호	CJ 창업투자	100억	25억	87.5억	87.5%	게임전문	2001.12.31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3호	한솔 산업투자	100억	25억	81.0억	81.0%	게임전문	2001.12.31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7호	KTB 네트워크	107억	30억	179.9억	168.1%	애니/캐릭터/게임 50%	2002.6.2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1호	CJ 창업투자	140억	50억	210.3억	150.2%	방송영상콘텐츠	2002.11.2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5호	삼성벤처투자	100억	45억	95.1억	95.1%	문화콘텐츠전반	2002.12.2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4호	엠벤처투자	95억	45억	138.5억	145.8%	문화콘텐츠전반	2002.12.3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디지털영상투자조합	소빅창투	500억	125억	479.7억	93.7%	애니메이션(컴그래픽스) 및 영상물	2003.1.2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투자조합	일신 창업투자	100억	25억	87.1억	85.0%	음악전문	2004.8.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2호	KTB 네트워크	100억	25억	90.7억	90.7%	방송영상콘텐츠전문	2004.12.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합계		1,703억 (1,873억)	495억	1,884억	110.6%			

구분	주관사	결성규모	정부 투자액	투자액	투자 실적율	주요 투자분야	설립일	비고
----	-----	------	--------	-----	--------	---------	-----	----

(4) 해산조합 : 게임전문 1호(2005.4.26. 해산)

구분	운용사	결성액	출자액	투자액	투자비율	분야	결정일	비고
게임1호	한솔 창업투자	150억	50억	90.7억	60.5%	게임전문	2000.12.18	한국게임산업개발원

(5) 융자현황

* 1999년 ~ 2006년 융자지급실적(기보 포함)

(단위 : 백만원)

분야	총계	상품(기보)	시설	비고
1999년	7,367	1,997	5,370	
2000년	24,574	9,667	14,907	
2001년	34,912	18,576	16,336	
2002년	37,766	22,231	15,535	
2003년	29,063	17,118	11,945	
2004년	34,030	21,240(6,709)	12,790	
2005년	28,083	25,856(14,148)	6,537	
2006년	44,221	25,856(14,363)	18,365	
계	240,016	138,231(35,220)	101,785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운용 성과

(1) 문화산업 투자 선도

문화산업진흥기금 545억원을 투자하여 총 2,023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 고위험, 장기간의 투자회입 기간 등의 어려움을 정부기금의 선도역할로 극복하여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출범 이후(1999~2004) 문화산업 취업자는 48.4%(15만명),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15%(9조 9천억원), 수출실적은 30%(163백만달러) 증가하였다.

(2) 용자를 통한 산업 육성효과

1999년부터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시설 현대화 용자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1,677억원 용자, 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때 용자사업 수혜업체의 당기순이익(세전)은 1999년 평균 269백만원에서 2002년 538백만원으로 증가(연평균 25.97%)하였고, 고용인원은 연평균 15.28%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물적 담보를 중시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우수 문화산업 업체에 용자를 실시하였다.

3.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 논의

- 1) 1999년말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하였다.
- 2) 2003년말 기금관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3년마다 준치여부를 평가하고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 사이에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교수)에서 준치 평가가 있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견취합보고를 한 바 있다.
- 3) 경 과
 - 2004년 8월 : 기금운용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2004년 9월 13일 : 공청회 개최(혁신위)

- 2004년 11월 17일 : 기금정비토론회 개최(혁신위)
- 2005년 2월 16일 : 혁신위 재정세제전문위원회 회의(8개 부처 참석)

4) 평가결과

당초 상당수의 기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기금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전체 55개의 기금중 5개 특별회계와 4개 기금(8개 부처)에 대해 폐지 평가를 하였다. 평가 근거로 기금운용성과 저조 및 수입과 지출의 상관성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금설립 역사가 짧고 수입원이 없는 기금들을 폐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그 이후의 일정

2005년 2월말 청와대 보고 후 2005년 3월중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입법을 통한 기금 폐지 혹은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4.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대안 : 『모태펀드』 전환

최근 문화콘텐츠투자조합에 대한 공공자금 투자 감소, 투자조합의 수익률 저하 등으로 신규조합의 설립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총액이 2000년의 1,985억원에서 2004년 720억원으로 감축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의 해산시점이 되는 2005년 2007년부터 문화산업 투자재원 부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절실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민간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기산업화 단계인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기업이 영세하고, 시장이2) 성숙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2007.4., 60쪽 아래 참조.

기존의 문화산업기금을 활용하여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출자총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손실의 일정비율을 우선 충당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향후 수요증대 전망을 감안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2,744억원)을 모태펀드로 전환하여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모태조합 관련 규정을 신설(2004년 12월)하였으며,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캐피털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기적인 공적자금 출자확대와 함께, 관련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자와 제작자간 합리적 수익배분³⁾ 구조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특수목적회사(SPC) 도입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설립 현황

분야별 \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출자금액)
영상(영화, 에니, 게임)	3개조합 215억원	11개 조합 935억원	13개 조합 1,254억원	7개조합 810억원	6개조합 522억원	5개조합 620억원	45개조합/4,356억원 (1,301억원)
애니메이션			1개조합 200억원		1개조합 500억원		2개조합/700억원 (135억원)
방송영상				1개조합 140억원		1개조합 100억원	2개조합/240억원 (75억원)
게임		1개조합 150억원	2개조합 200억원				3개조합/350억원 (100억원)
음악						1개조합 100억원	1개조합/100억원(25억원)
기타 문화콘텐츠			3개조합 331억원	3개조합 302억원			6개조합/633억원(210억원)

3) 디지털콘텐츠의 합리적 수익배분을 위한 유통구조 환경변화에 대하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에 따른 합리적 수익배분 조사, 2006.11., 11쪽 아래 참조.

분야별 \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출자금액)
계	3개조합 215억원	12개 조합 1,085억원	19개 조합 1,985억원	11개 조합 1,252억원	7개조합 1,022억원	7개조합 820억원	56개 조합/6,379억원 (1,846억원)

5. 기금평가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010년 폐지하고 일부 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결과는 2007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07년 5월 29일 밝혔다. 기금존치 평가는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단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2006년 기준 58개 기금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기금⁴⁾ 등 정비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단은 존치평가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2010년 폐지토록 판정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운영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사업구조조정 및 재원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판정을 내렸

4)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관리하고 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기금의 재원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장·박물관·미술관·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모금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중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출연한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중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의 지원에 사용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제21조).

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과학문화 창달사업 등은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해외협력프로그램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중복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 감소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이 우려됨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고용을 차등, 부담금 누진제 도입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나머지 49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관정을 내렸으나 일부 사업성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구조 및 내용 등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은 담배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국제교류 기여금 등 재원에 알맞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원과 기금 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 국민 중심의 생활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존치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평가단의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출보험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재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특정물질사용 기금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민주택기금, 사학연금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은 운용성과와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는 지난 2년간 평가결과가 저조했던 기금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금 등 39개 기금(사업운영 26개, 자산운용 33개, 중복 20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결과, 사업운영부문의 유형별 평균점수는 연금금융 분야(10개 기금)가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문화(6개 기금) 67.2점, 산업과학(3개 기금) 63.8점, 복지노동 분야(7개 기금) 60점 순이었다. 연금금융 분야 기금 가운데는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이 77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반면 농수산신용보증은 6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복지노동 분야는 산재보상보험기금이 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군인복지기금은 50.3점으로 최하위로 평가됐다. 교육문화 분야는 복권기금이 74.9점으로 가장 높고 방송발전기금은 60.7점으로 최하위였으며, 산업과학 분야는 쌀소득보전기금이 73.4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수산발전기금은 56.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가가치 증가율 등 사업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훈련기관, 외부진료기관 등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보험기금은 리스크 관리 고도화, 사업비 지출한도 설정 등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장애인 증가율의 목표치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축구 등 인기종목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와 관련이 부족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의 유형별 평가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대형연금)이 87.9점, 수출보험기금(대형사업기금)이 83.9점, 문예진흥기금(중형) 82.6점, 예보채상환기금(소형)은 80.9점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사학연금기금(대형기금)은 80.4점, 국민주택기금(대형사업) 66.4점, 학자금신용보증기금(중형)은 61.9점, 군인복지기금(소형)은 56.1점으로 각각 최하위로 평가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위험현황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국민주택

I

기금은 사업비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을 하지 않는 등 유동성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인복지기금은 기금단위의 통합자산운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⁵⁾

6. 모태조합 문화계정 출자분 투자 진행상황

(1) 모태조합 출자액 : 500억원(2006년도)

- 자조합 출자 : 7개, 316억원 출자완료 - 결성규모 1,037억원
- 자금모집중 : 1개 펀드 60억원

(2) 출자비율 - 출자 요청액

- 일반 투자비율 30% (모태조합 출자 30% + 일반 투자자 70%)
- 정책적 자조합 및 취약분야 40%(모태조합 출자 40% + 일반투자자 60%)

애니메이션(캐릭터 포함), 공연예술분야

(3) 주목적 투자율(특정문화산업분야 투자율 60% + 다른 분야 40%)

사업차수 (공고일) 신청/ 선정	조합명	창투자사	결성 규모	모태조합 출자액	비고
1차 (06.3)	센추리온 영상 4호 조합	센추리온 기술투자	400억	120억	결성실패
6개/2개	IMMCG애니메이션 조합	IMM 인베스트먼트	350억	100억	결성실패
소계			0	0	

5) 인터넷신문 2007년 6월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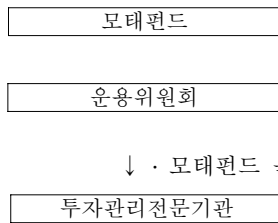
사업차수 (공고일) 신청/ 선정	조합명	창투자사	결성 규모	모태조합 출자액	비고
2차 (06.8)	KTB콘텐츠전용유 통화 1호 조합	KTB네트웍스	200억	60억	결성완료
	CJ창투 9호 영화 조합	CJ창투	100억	30억	결성완료
	보스톤 영화전문투자조합	보스톤 창투	187억	51억	결성완료
6개/3개	소계		487억	141억	
3차 (06.11)	IMM공연예술전문 투자조합	IMM 인테스트먼트	100억	40억	결성완료
	소빅6호영상콘텐츠 투자조합	소빅창업투자	(400억)	(160억)	결성실패
	ISU-문화콘텐츠투 자조합	이수창업투자	250억	75억	결성완료
	미시간글로벌콘텐 츠 전문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 피탈	100억	30억	결성완료
8개/5개	KTIC문화콘텐츠전 문투자조합	한국기술투자	100억	30억	결성완료
소계			550억	175억	
2007년 1차 (07.3)	아이퍼시픽애니메 이션 투자조합	아이퍼시픽파 트너스	(200억)	(80억)	심사탈락
	엠벤처제1호 공연 예술 투자조합	엠벤처투자	(150억)	(60억)	심사승인
	우리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우리들 창업 투자	(200억)	(60억)	심사탈락
	CJ창투10호 방송 영상 투자조합	CJ창업투자	(200억)	(60억)	심사탈락
4개/ 심사중	소계		(150억)	(60억)	
총계			1,037억	316억	

7. 현황 및 향후 전망

II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운용위원회, 구체적인 펀드관리 및 출자심의 등 운용실무를 담당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그리고 출자결정시 거쳐야 하는 출자심의회 등이 주요한 기관이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였고, 이를 문화산업 별도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운용위원회, 펀드관리팀, 출자심의위원회 등에 문화산업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말 폐지되었으며, 보유 잔액 및 투융자 회수금이 2007년 이후 모태조합에 출자될 예정이다.

<그림> 모태펀드 운영체계



↓ 운영목표, 계획, 전략수립

펀드관리팀	투자운영팀	리스크관리/회계
· 펀드운영기획 · 사후관리	· 투자전략수립 · 투자업무실행	· 리스크관리 · 회계/compliance

정부의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정책 방향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효과의 불확실성과 유통구조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민간자금의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보호에서 ‘저작권산업 형성 지원’으로 저작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투자활성화로 문화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투자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1) 문화산업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활성화 유도

모태펀드 신설 및 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결성

- 중소기업청 모태펀드내 문화산업 별도계정 신설 및 문산기금 500억원 출자
- 문화산업 전문 신규투자조합^① 공모 및 출자

문화산업분야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도입 추진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제고로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유도

제작된 우수파일럿 프로그램의 국내 외 투자유치 지원^②

- 국제 전시회 등에서 외국 바이어 대상 우수파일럿 데모필름 홍보 등 추진

(2) 문화상품 개발 및 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문산기금 융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접수 추천을 통하여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부문에 대한 융자지원(2006년 기금 477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원스톱 융자서비스 제도 운영 계속^③

II

2. 문화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1) 문화콘텐츠 디지털 유통환경 개선

한국음악뮤직뱅크(KMDB) 구축으로 온라인음악 유통지원 강화

- 한국 음악 표준 메타DB구축(30만곡), 디지털 식별체계도입으로 불법음악시장 개선^①

문화콘텐츠 유통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콘텐츠 식별체계(COI) 사업의 확대 추진

(2) 영상물 유통체계 현대화 지속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확대 등 영상물 유통체계 개선

- 조세감면(소득 증가분 50%) 등 유인책 시행으로 통합전산망 가입 확대 유도
- 영화산업 통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통비용 축소(입회비용 절감)를 통한 영화산업 수익성 제고 효과^①

‘영상물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구축⁷⁾

3.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 집중 지원

(1) 새로운 유망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작 집중 지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창작 활성화 지원

- 차세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6)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0쪽.
 7)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0쪽.

- 위성방송, DMB, 데이터방송 등 브로드 밴드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창작 지원

- 우수 에듀테인먼트 파일럿 제작 지원 등 에듀테인먼트 창작 지원
- 수출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현지화 제작 지원

각 분야 우수 시나리오 공모 지원을 통한 창작소재발굴(25편)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 공통 취약점인 스토리텔링 강화 및 다양한 소재 개발^③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지속 및 수요자와의 연계체계 구축

- 문화원형콘텐츠의 산업 연계, 교육 활용 사업, 수요자 지원 및 홍보 강화

우수파일럿 제작 지원, 스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④

(2)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문화콘텐츠 창작 인프라 구축

디지털 환경에 맞는 D-시네마 제작기반 구축^⑤

- D-시네마 제작시설구축, 테스트베드 설치 및 D-시네마시스템 표준화 연구, 디지털 영상 시스템 확충, 전문인력 양성
- 프린트 제작 배급 비용 절감으로 독립 예술영화 활성화와 격오지 주민 문화향수권 신장효과, 위성과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동시개봉 가능. 시장 50% 전환^① 연간 유통배급비용 356 억원 절감, 1200톤 폐필름 폐기비용 절감⁸⁾

모바일콘텐츠 수출지원 센터 운영 지원⁹⁾

8)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3쪽.
 9) 해외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하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년

II

- 우수 유망 모바일콘텐츠 포팅 및 테스트 지원
- 수출 유망 모바일콘텐츠 컨버전 지원(60개)

상암동 DMC내에 문화와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한 미래형 문화 콘텐츠복합공간(Culture Contents Complex) 조성

③

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 운영: 저예산 우수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게임산업 지원 인프라 강화

④

-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GITISS),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게임도서관 운영

⑤

- 게임연구센터(GRC) 지원: 대학 등 10개소 게임관련 연구수행 지원

(3) 장르별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지원

독립, 예술영화 제작 등 영화산업 다양화 지원

- 독립영화 예술영화 디지털영화 독립 디지털 영화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 및 아트플러스를 통한 예술영화 배급지원 강화

①

대중음악 산업의 창작기반 구축 및 수익 윈도우 다변화 지원

- 인디레이블, 신인음반 지원 등 창작기반구축 지원

- 뮤직비디오, 수출용 기획음반 제작 지원 등 수익윈도우 다변화 지원

독립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창작 지원

- 독립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캐릭터 상품 제작 및 연계프로젝트 제작 지원, 우수만화 기획 제작 및 만화작가 창작지원

게임산업분야 창작 지원

해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총괄편, 2007.2., 62쪽 아래 참조.

- 우수게임 제작 지원, 이달의 우수게임,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¹⁰⁾

제3 장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콘텐츠기금조성의 현황

모태펀드의 의의

1. 모태펀드의 개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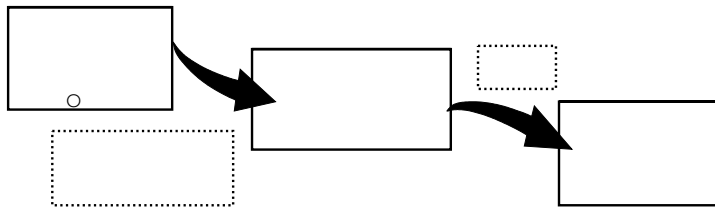
모태펀드(Fund of Funds)라 함은 ‘펀드를 위한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벤처캐피탈이 시장에서 조성하는 다양한 하위 자(子)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된 상위개념의 펀드를 의미한다.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하위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이때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가가 내부에 전문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우수한 운용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한국모태펀드(Korea Fund of Funds)가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2009년 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천억원, 정부재정 4천억원 총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 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된다. 한국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다. 2005년 6월 한국모태펀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10)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4쪽.

그동안 민간하위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투사에 대한 모태적 펀드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조합개념으로 별도 재원을 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모태펀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모태펀드 운영을 위해 최근 정부는 2005년부터 별도 전담기관을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기관은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100% 출자받아 운영되고 있다. 흔히 모태펀드를 FOF라 약칭함. 그리고 '모태조합'이라는 용어는 '모태펀드'의 외형적 형태를 의미하며 일종의 법률적 양태를 말하기 때문에 통상 구분하지 않고 호칭하므로 동일하게 보면 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모태펀드의 출자대상은 중소기업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CRC조합 등임).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¹¹⁾는 투자조합의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이 전문적으로 수행



모태펀드
(Fund of Funds)

모태펀드를 통해 우수 업체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지원은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투자조합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모태펀드를 통한

조합원(출자자)

**창업·벤처
기업**

11)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하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창업지원방안 및 직접화 특성연구보고서, 정책연구 02-07, 11쪽 아래 참조.

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투자갈증을 해소해 줄 기금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원래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 설립 계획은 2005년 3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공개되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2천7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에 영화진흥금고, 기관 투자 등을 더해 2010년까지 1조원 모태펀드를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운용계획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 조정을 거쳐 중소기업청 모태펀드로의 통합안을 받아들였다. 문화관광부 출자분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내 문화산업 투자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총 1437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관련 자펀드 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006년부터 모태펀드에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이 편입된 데 이어 지금까지 투·융자되어 온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회수로 2007년 말까지 최소한 1200억원이 추가로 모태펀드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모태펀드에서 자금을 받은 KTB콘텐츠전문유동1호·CJ창투 9호영화·보스톤영상콘텐츠 등 3개 전문펀드는 최근 투자자 모집에 성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차에서 선정된 2개 펀드가 외국투자 유치 난항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결성에 실패한 후 우려감이 일기도 했으나 2차 선정 펀드는 무난히 총 417억원 규모의 조합 결성에 성공했다. 보스톤은 곧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3개 영화에 총 2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CJ와 KTB도 투자대상업체를 1차 선별하고 최종 낙점만 남겨놓은 상태다. 3차로 선정된 5개 펀드도 곧 조합결성을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영화와 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병

우 소빅창투이사는 “현재 자금 결성이 진행중이며 1 2개월 이내에 결성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말까지 최소 1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모태펀드 투입은 올해에도 계속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연내 그동안 투·융자된 1200억원 이상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회수해 모태펀드에 투입한다. 자펀드 결성 시 모태펀드 투자 비중이 30%가량 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600억원가량의 자펀드가 추가 조성되리란 게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측의 기대다. 특히 2011년까지 모태펀드에 총 3000억원가량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투입한다는 당초 계획을 고려해 볼 때 총 1조원에 달하는 펀드 조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벤처투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영화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일반 영화펀드 투자 결성이 어려워지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금흐름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모태펀드기반의 펀드결성이 자금시장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¹²⁾

2. 조성 배경

원래 초기 벤처투자 시장의 형성을 위해 공적자금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운용의 비효율성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민간에 맡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예산 배정에 따라 투자 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의 투자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3. 추진 경위

12) etnews 2007년 5월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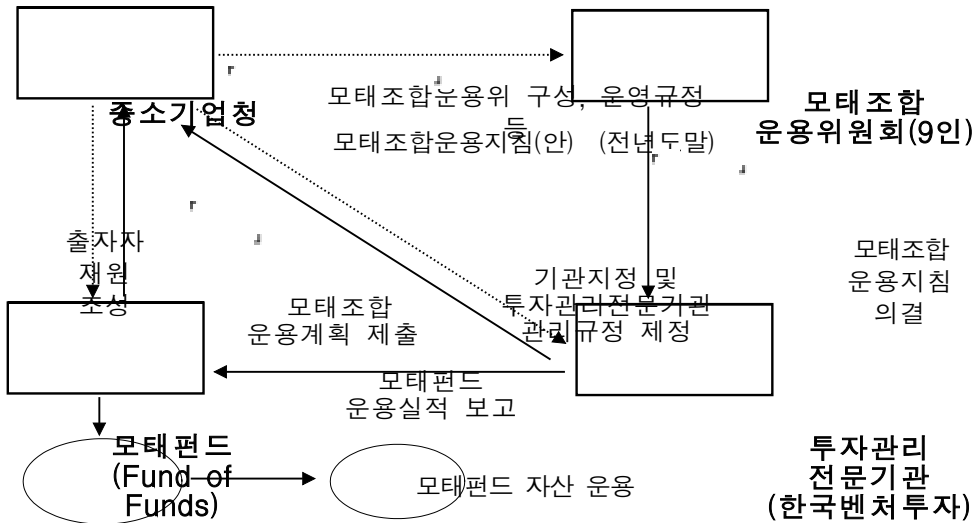
그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7.)』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2004.12.24.)』을 통해 모태펀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즉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2004.12.31.)으로 모태펀드의 운용 근거를 마련(서갑원 의원 외 150명 발의)하였다. 그에 따라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서 매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의결하고 민간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모태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그리고 2005.3월 벤처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사장을 선임하고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하였다(2005.4.21 6.8). 그리고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개소하였다(2005.6.29.).

. 모태펀드 운용 현황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1) 운용 체계

II



출자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산기금), 문광부(문산기금), 특허청(특허특별회계) 투자

투자조합
 투자대상(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영기간 : 30년

모태조합운영위원회 : 9인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2) 모태펀드 도입 효과

모태펀드를 도입함으로써 자생력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단년도 배정 예산의 소진에서 탈피하여, 시장 상황 및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조성된

재원은 향후 30년간 재투자(Revolving)방식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벤처·창업투자 재원의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회수 자금을 이용하여 출자하는 장식을 취하게 될 예정이다.

출자 방식의 간접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투자조합에 30~50%를 출자함으로써 원활한 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하게 된다. 여기서 투자조합의 결성 규모는 다음과 같이 증가되었다: (2004) 5,872억원 (2005) 7,149억원 (2006) 9,531억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출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기관이 과거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도덕적 헤이 등 부작용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시금석이 되어 기관투자자 등 다른 출자자 모집에 유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 정부가 직접 출자할 때 불가능했던 지속적인 투자성과(Track record)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투명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선진 투자문화가 정착되게 될 것이다.

(3) 운용 실적

현재까지 총 50개 조합에 3,332억원 출자 12,82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 완료

< 모태펀드 출자조합 현황 >

사업연도	조합수 (개)	결성금액 (억원)	모태출자액 (억원)
'04년	7	2,717	586
'05년	17	4,064	1,245
'06년	26	6,039	1,501
(4) 1조원계 조성 계획	50	12,820	3,332

중산기금 등을 통해 '09년까지 조성 완료 목표

'06년까지 총 3,851억원의 재원 조성을 완료하고, '07년에는 3,065억원 추가 조성 추진 중



< 모태펀드 조성 계획 (억원) >

연도	'05	'06	'07	'08	'09	계
중산기금	1,701	1,100	900	1,000	1,000	5,701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모태펀드 출자 현황

(1) 특혜특별회계

계	1,701	2,150	3,065	1,348	1,286	9,550
---	-------	-------	-------	-------	-------	-------

문화산업진흥기금(문산기금)의 폐지에 따라 2007.1.1일 이후 모태펀드에 전액 출자도록 범률에 명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2조 >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2제2항의 규정에서 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출자하고

관련 업무는, '벤처기업유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협약을 체결

(2) 모태펀드의 문산기금 계정 출자현황

(개, 억원, 괄호 안은 모태펀드 출자금액)

유형	2004년		2005년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문산기금	-	-	4	623	-	-	4	623	6

제 4 장 문화콘텐츠사업의 세계동향 및 금융지원 방안

세계의 문화산업의 흐름은 문화산업의 기금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는 먼저 지역 권역별 문화산업현황과 문화산업기업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조달이 문화, 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점에 비추어 문화콘텐츠 내지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의 금융상의 애로점과 신종 자금 조달방안으로서의 콘텐츠 가치의 담보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 주요 국가별 권역별 문화산업 현황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6 2010□□에 따르면 국가별 세계 문화산업 점유율은 미국이 41.2%(2006년 기준)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I 성장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7.1%(2001 2006년 연평균)로 가장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¹³⁾

2005년도 기준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별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553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은 일본, 독일, 중국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296달러로 세계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규모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평균(2001 2006년) 4.8%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 58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2006 2010년) 5.6%로 성장해 726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여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성숙기에 이른 시장으로 성장속도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비디오게임과 인터넷 분야가 연평균 성장률 8.9%와

13)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31쪽.

8.4%로 가장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특히 비디오 게임은 차세대 게임 콘솔과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할 것이며, 브로드밴드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연평균(2001 2006년) 5.4%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 46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2006 2010년) 6.1%로 성장해 2010년에는 5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 동유럽이 가장 높은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인터넷 접속서비스, 라디오 및 옥외광고, TV 프로그램유통, 방송 및 케이블, 비디오게임분야에서 두 자리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연평균(2001 2006년) 7.1%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 30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2006 2010년) 9.2%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10년에는 425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 TV 프로그램 유통, 카지노, 비디오 게임 등은 두 자리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국과 인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상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여 일본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서 최대의 문화산업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는 연평균(2001 2006년) 5.5%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 4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2006 2010년) 8.5%로 성장해 2010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연평균(2001 2006년) 6.0%로 성장해 2006년 33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010년까지는 연평균(2006 2010년) 5.9%로 성장해 2010년의 시장규모는 410억 달러에 이르면서, 비디오 게임에서 두 자리 수

II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같은 신흥 소비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은 2010년까지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게임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VISTA블록, 발트 3국의 등장도 세계문화콘텐츠산업의 지형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영상제작을 중심으로 9개의 대문화사업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월리우드’의 뉴질랜드는 정부가 영화제작비의 12.5%를 환원해주는 등 세계적인 영화촬영지로 부상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핀란드 등도 문화산업을 첨단미디어, IT산업과 결합한 퓨전형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역 클러스터 조성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국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세계 문화산업 관련 주요 기업의 동향

세계 문화산업 시장은 ‘굴뚝없는 공장’들의 ‘소리없는 전쟁’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으로 문화산업 환경은 기획 및 창작, 제작 및 생산, 유통 및 배급, 소비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체계가 근본적,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작에 있어서 에듀테인먼트, 인터넷 만화(웹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모바일 캐주얼 게임, e-스포츠, 전자책(e-book), 디지털 싱글 등과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탈장르 및 복합콘텐츠라는 새로운 양상이 생성되고 있다.¹⁴⁾

이와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디어산업에서 일고 있는 구조적인 인수 합병을 통한 성장, 수직적 수평적 통합, 미디어복합기업의 세계화,

14)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58쪽.

미디어 기업들의 소유 집중화 등 네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세계 5대 엔터테인먼트기업인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CBS 등은 이러한 네가지 특징을 그들의 경영전략으로 삼아 세계문화산업 시장규모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미디어기업들의 행보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NBC와 뉴스코퍼레이션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인수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의 전통 미디어(NBC TV, 폭스 TV)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인터넷 포털파트너(MSN, 야후, AOL)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미디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한 결과, 최근 인터넷 영상 사이트 점유율 순위에서 유튜브가 43.5%로 1위인 가운데, TV방송사들이 41%로 2위로 급상승하는 등 전통방송국들의 인터넷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구글(26.5%), MSN(24.5%), 야후(22%), 마이스페이스(16.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방송국과 영화사 등의 콘텐츠업체들도 콘텐츠보호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터넷 영상부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사의 콘텐츠를 홍보 판매하는 채널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위성방송사업자 BSkyB는 통신시장에 대한 콘텐츠서비스전략으로 영화, 스포츠 등을 인터넷(구글)과 모바일(SKY Digital)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HD TV로 프리미엄화 하거나 Sky Bet를 통해 양방향 부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 미국 통신업체 컴캐스트는 영화사들과 DVD 발매 이전에 DMB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II

‘영화관 상영-DVD발매-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의 순서로 이어지던 전통적 영상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장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기존의 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중심의 가치 사슬과 비즈니스모델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 예컨대, 소니, GE, 애플, MS, IBM 등의 세계적 하드웨어 기업들은 복합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영상 플랫폼이 PC 중심에서 TV로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대응에 소극적이던 가전업체들까지 대응에 나서게 하고 있다. 소니와 애플 등은 PC와 TV를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단말기를 내놓았고, 일본 TV업체 5개사는 2007년 2월 TV에 특화된 인터넷 서비스 ‘acTVila’를 개시하였다.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선두인 노키아도 글루모바일, EA모바일 등의 거대 게임 퍼블리싱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휴대폰 통신기능을 이용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개방적인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미디어콘텐츠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융합으로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수익모델이 부상하게 됨에 따라 수익보장형 광고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료화 수익과 광고 수익이 혼재된 형태의 콘텐츠 수익모델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유통의 다양화는 콘텐츠+콘텐츠(위너브라더스+EA), 콘텐츠+플랫폼(디즈니+AOL), 콘텐츠+네트워크(폭스+Vodafone)와 같이 ‘콘텐츠+알파’공식을 일반화시킬 것이다.¹⁵⁾

15)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59쪽.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행태

III

문화콘텐츠 내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으로서는 내부자금이 가장 높으나, 외부자금 중에는 은행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외부자금 차입방법은 은행자금(73.2%), 정책자금(19.4%), 비은행금융기관(3.4%)의 순으로 은행으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 중소기업 외부차입자금의 조달비중(%)

연도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해외자금 차입
2002	70.7	23.4	3.1	0.3	0.2	1.9	0.4
2003	73.2	19.4	3.4	0.5	0.5	2.1	0.9
2004	72.7	19.8	3.3	0.6	0.3	3.1	0.2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금공급주체로는 은행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정책자금도 은행을 통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공급주체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창투사 들은 상당부분 IT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IT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용자, 투자 정책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용자 및 투자는 주로 민간자금을 의미하며, 정책자금은 용자 및 투자를 포괄한다.

1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의 금융구조 현황 조사 분석연구, 2005.12., 73쪽.

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의 금융구조 현황 조사 분석연구, 2005.12., 74쪽.

콘텐츠가치의 담보화 방안

문화콘텐츠 내지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가지는 기업가치를 담보화 하는 방법으로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개별 지적재산권을 담보화하여 자금조달하는 방법과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거나 이와 연관된 콘텐츠 자체를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지적재산권은 권리 그 자체이며, 일반적으로는 로열티 수입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는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해 지적재산권이 제품에 화체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가치 평가는 그 제품에 주목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¹⁸⁾

이곳에서는 콘텐츠가치의 담보화를 검토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콘텐츠의 가치평가방안을 검토하면서 문화콘텐츠자금조달 방안으로서 담보가치평가방안에 대하여 분석, 연구한다.

1.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법적 근거

지적재산권담보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최근 실물담보나 신용담보도 보유하지 못한 신규창업자에게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권리화된 개별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지적재산권 담보 중 기술담보제도가 이미 여러 기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바, 현행 『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산기법”이라함) 제2조 제6호는 기술담보제도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라 하고, 이에 동법시행

1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조세 및 금융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02-08, 161쪽.

령 제25조의2에서 「산업발전법」 제25조, 제28조에 의한 첨단기술개발사업자금,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자금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8조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¹⁹⁾을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²⁰⁾이나 일본²¹⁾에서는 금융기관이 민간차원에서 컴퓨터 관련 기업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하는 것을 기술담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법적 근거는 현행 법체제상 없는 상태에 있어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담보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기존의 산기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19)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에 의거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20)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담보제도보다는 잘 발달된 벤처캐피탈에 의해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신용대출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지 기술요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술위주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리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특정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제를 실시함으로써 벤처캐피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명호, 프로그램지적재산권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판례월보).

21)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일본 흥업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90년대 중반부터 특허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일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이 때 보유기술의 담보가치 및 시장성 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은행의 자회사인 전문평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은행은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순수한 의미의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거래기업이 업종 또는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벤처기업으로서의 육성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기술담보제도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한명호, 前揭論文).

IV

그렇지만 현행 산기법령에 의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담보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행해지고 있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²²⁾하여 그 기술을 직접 담보로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기술가치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식

이 가운데 전자의 방법인 기술담보제도는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후자의 방법은 기술가치평가제도라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함)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부설기관인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하여 담보취득 없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후자의 방법인 기술가치평가제도²³⁾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지적재산권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의 평가가치만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발전된 지적재산권의 지원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방식에서

2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는 Gorden v. Smith/Russel L. 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1998 Cumulative Supplement; Gorden v. Smith, Trademark Valuation, John Wiley & Sons, 1997이 있다.

23) 이에 대한 상세는 최병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5.31., 132쪽 아래 참조.

대상되는 기술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KT, NT 등을 보유기업의 기술로 한정되어 있다. 대출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실행하고, 기보는 평가된 가액의 보증서만 발급하고 실제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실시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기법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적재산 담보제도를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금융기관 등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하여 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²⁴⁾ 바 있다. 첫해인 1997년에는 29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신청을 받아 15개 기업, 19개 지적재산에 대하여 50억원의 가치평가를 완료하여 이 중 6개 기업의 6개 지적재산에 대하여 17억원의 실제 대출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지적재산담보가치 금액이 인정된 19개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특허와 실용신안이었고,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담보대출은 없었다.

현재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담보대출을 전담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현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직접 담보로 설정하여 1999년의 경우 104건 244억원의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우리나라 최초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담보가 없어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4) 이를 위해 구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를 기술담보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산기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5조에 근거한 첨단기술개발자금, 동법 제25조 내지 제31조에 근거한 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기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즉 신청기업이나 발명가가 분야별로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금지원 승인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지원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체재산권담보를 요구하며, 이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 비로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특허권을 평가받아 그 가액평가된 금액만큼 금융기관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유체담보물이나 일반적인 신용보증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금리도 일반자금대출금리 수준이어서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

현재 금융기관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로가 바로 기보에 의한 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특허권을 금액으로 가치평가하여 그에 따라 기보의 보증 아래 한국기술진흥금융(주)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이 업무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최고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점에서는 우리 기금 및 일반 신용보증구조와 전혀 차이가 없다. 기술평가를 위해 산하에 『기술평가사업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분야의 기술평가전문가에 의해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상기업

도 기술개발시범사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ISO 9000 시리즈인증기업, KT마크 인증기업 등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증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비록 기금이 기술평가사업센터와 같은 전문 기술평가기관이 없어도 특정업종이나 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하는 방식인 현행 지식기반기부 특별보증제도에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기금의 지원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기보의 기술평가 대출보증 방식에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담보와 보증한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4)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회의 특허담보제도는 발명진흥법 제21조 및 제23조, 제25조에 의거하여 1996년 2월부터 산업재산권으로 전문연구 및 시험기관 등을 통해서 우수 특허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및 금융자금의 우선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록된 발명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로 출연지원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기술성의 경우는 국립기술품질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담당하며, 경제성의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보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그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술을 기업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발명의 촉진과 사기진작책으로는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금융기관

기보의 담보대출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있어 지적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제도는 아직도 생소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들 각자가 지적재산을 평가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도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그 간 특허권 보유기업, 기술개발투자기업 등의 신용을 평가할 때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순방식으로 이들 기업을 우대하였다. 다만, 기보의 기술관련 보증의 시행으로 1996년부터는 이에 다소 진일보하여 지적재산권 담보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기술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기술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신심사시 기업신용평점 또는 기술력평가표평점상 일정 점수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지적재산권담보 평가금액이 아닌 사업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본래 의미의 지적재산담보대출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취득하면서 일부 신용공여를 하고 있어 다소 지적재산권 담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도 1996년 11월부터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 보유기술을 함께 평가하여 대출지원한도를 산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적재산권 담보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제도에 거의 흡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관련 지원제도 대부분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만을 평가하고, 동 기술의 평가금액을 담보로 하는 본래 의미의 기술담보제도는 아니지만, 부분적이거나 기업 신용평가지 가산점만 부여하던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진일보

한 추세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움직임은 인식전환의 출발점이다.

3.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방법

다양한 지적재산권 중에서 기업이익에 관련되는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향후에 얻게 될 성과를 예상하여야 하는 커다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가능한 최소화 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가치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담보가치의 평가란 지적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은 담보물 처분에서 매도인파매수인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²⁵⁾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市場去來比較方式(市場接近法), 原價方式(費用接近法), 期待收益方式(收益接近法), 경험법, 자산기준평가법, 자본환원법, 비교회사법, 비교취득법, 현금유동할인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자산의 동태적 경제가치에 착안하여 당해 자산이 장래 계속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수익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술가치평가 유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시장거래비교방식

시장거래비교방식(시장접근법)은 공정한 거래를 전제로 한 시장가치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실제 거래 자료와 당시의 시장상황 및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기존 거래와의 比較 배수

25)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의 총화의 현재가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한명호, 前揭論文).

IV

(multiple)를 산정한다.²⁶⁾ 이때 기존 거래시장을 효율성, 성숙성, 比較可能性 차원에서 평가하고 또한 價値評價 목적으로 보아 시장거래 적용이 합당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기술의 가치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

시장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기술자산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 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이다. 이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시장접근법은 기술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대상 기술의 시장이 존재하거나 최소한 아주 유사한 기술의 거래가 선행되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거래가 무수히 일어나 안정적인 價値豫測이 가능해야 한다.²⁷⁾ 그러나 유사한 거래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이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한계에 접하게 되므로 이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²⁸⁾

(2) 원가방식

원가방식(비용접근법)은 제품의 재제작 비용(reproduction cost) 혹은 대체비용(replacement)을 측정하여 이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재제작이라 함은 진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이며, 대체는 진

26) 최병규,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54호, 특허청, 1999.5., 110쪽 아래.
27) 장태중, 개별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2~53쪽 참조
28) 이원태, 기술의 가치평가기법-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일본 판레나 국 내외의 실무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품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제품을 현재 가능한 자재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생산원가 변동과 減價償却 요소이다.²⁹⁾

비용접근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service capability)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장래적 편익이라는 가치로 간주하는 평가방법이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여기에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지적재산권 내지 기술의 경우, 제품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개발비와 실제의 상품가치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업의 개발능력이나 타사제품과의 경합상태 등 제반의 요소에 의해 개발비와 상품가치의 상호연관성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³⁰⁾

(3) 기대수익방식

기대수익방식(수익접근법)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근거로 미래 수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을 주로 이용한다. 즉,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예상매출액 및 수익을 환산하여 현재의 현금화하는 技法을 말한다.

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미래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산출물 중 기술의 기여도를 算定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은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비용으로는 매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접근법의 방법이 합리적이다. 장래의 현금흐름

29) 김홍주 기민호 송근장 이철남, 특허담보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활용, 주간기술동향, 1997, 13면 참조,
30) 이원태, 전게서, 산업자원부

IV

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누어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접근법은 새로운 기술 資産權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수익창출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이다.³¹⁾

그러나 담보가치는 담보권 실행시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창출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처분시점이 중요한 매수인측에서는 별의미가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4.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1) 담보채권 미회수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우려/현물 유통시장 취약

지적재산권은 그 특성상 부동산, 유가증권 등 유체 담보물에 비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리스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외에 충분한 물적담보가 없거나 지적재산권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등은 통상 전체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높아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의 처분가치도 불안정한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 담보채권을 처분할 만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가치평가된 특허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기술장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³²⁾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담보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 장태중, 전계논문, 62~63쪽 참조.
32) 특허청, www.kipo.go.kr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가치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절대 부족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이 무체물 보다는 자금회수에 위험이 대체로 작은 유체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은 첨단기술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보증재원의 부족

지적재산권 담보대출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³³⁾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의 문제가 따른다. 정부에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를 계기로 기업 지원을 위한 각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보증기관의 정부출연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물적담보가 취약하여 신용보증이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우수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신용 및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는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담보대출보증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일반적인 신용보증과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첨단지식기반산업을 21세기 국가역점추진 시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이상,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조성이 필요하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전문평가기관의 부족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담보물의 평가문제이다.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담보물의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신용보

33) 이에 대하여는 최병규, 특허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상), 창작과 권리 2000년 가을호(제20호), 33쪽 아래; Rings, Patentbewertung, GRUR 2000, S. 839 ff. 참조.

IV

증기금의 산하기관인 『기술평가센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 기술정책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³⁴⁾ 등이 있으나 그 기능이 미흡하다. 이처럼 전문평가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지적재산권 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기술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평가시스템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담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정부차원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4) 산업재산권의 사후관리상의 곤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도 지적재산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특허소송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 설정시에 발명의 수준, 소송의 계속 유무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³⁵⁾

(5)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 미흡

국민의 정부는 1999년 5대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식기반의 확충을 제시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과 이들 기업의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의 동인이 지식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의 접근은 미흡하다. 더구나 지식기반경제가 경제발전단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산업보호와 육성이 시작되어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시스

34) 한국특허정보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특허평가시스템(K-PEG)을 통하여 국내 특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등록된 특허 총 65만여 건 중에서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추출하여 이들 품질을 비교 평가하여 특허 등록의 유지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9월 13일, A17면.

35) 장태중, 전계논문, 147면 참조

템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적재산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대인 법제도적 흠결과 지적재산권의 매매 시장이나 지적재산권 집중관리기관 그리고 최소한의 일정 수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담보가치 평가기관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바 있는 개별 금융기관에게 잠재가치가 무한한 무체재산권 대신 여전한 유체재산권위주의 담보취득관행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더구나 지금의 금융기관들은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외국자본이 진출하여 있는 등, 더 이상의 공기관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상황 하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5.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방안으로서 고려 대안³⁶⁾

기술담보제도는 우리나라의 개인 중소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제도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담보제도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보니 미비한 점도 많이 있다.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대항기업의 존재, 기술담보평가기관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평가기업, 기술담보대상자금, 관리방법, 기술거래시장, 기술담보기금 마련도 필수적이다. 특히 성공적 정착방안을 위한 핵심 고려요소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담보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기술평가기관과 객관적 평가방법 및 평가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담보의 관리방법으로써 공시방법, 절차, 담보권 행사방법, 처분절차, 부수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전절차, 보전내용, 보전시 구상권 행사의 방법과 내용, 기술담보기금의 조성 등을 규정한 법령의 존재도 필요하다.

36) 박동규,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 ^①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6

<표 2> 현재 실시중인 기술담보제도의 주요 고려대안

구분	대안 형태	비 고
평가 방법	대안1. 비용접근법 대안2. 시장접근법 대안3.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접근법 및 시장접근법을 병행하여 활용
평가 기관	대안1. 금융기관 대안2. 보증기관 대안3. 독립기관	독립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과급효과를 극대화
대출의 형태	대안1. 담보대출 대안2. 보증대출 대안3. 신용대출	금융기관의 융자성격상 담보대출로 융자를 주며 <u>보증 및 신용대출로 연계·확대 유도</u>
정부의 지원	대안1. 정부지원 대안2. 정부지원 무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술담보제도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 제작 및 각 기관과 연계해서 <u>정부지원 필요</u>
관련법	대안1. 특별법 제정 대안2. 기존법 수정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중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 삽입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u>특별법의 제정 추진방안 필요</u>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기술담보제도의 활용면에서 아직은 좀 서투른 점이 있다고 해도 점차 기술평가제도의 정착단계로 접어들면 수고를 덜 할 수도 있다. 바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와 대기업의 탈은행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산업계가 활력을 회복하게 된 것도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현저한 성장에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인데 은행의 심사시스템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대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대출시에도 고정자산이 적은 중소기업 등을 위해 동산 및 채권

담보의 금융,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창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즉, 국내은행들의 담보위주 심사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은행들도 기술담보 대출제도와 관련된 제도 및 규정들을 점진적으로 찾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행의 대출심사 방식에 문제가 많음은 부인할 수 없다.

6. 단기적 활성화 방안

(1) 기술담보제도의 인식제고

금융환경 및 기술경쟁의 격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대출전략에 있어서 기술요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량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에 안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평가비율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은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물적담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 기술을 우대하는 대출제도의 확산이나 기술의 신용보증제의 확대 그리고 벤처자금의 육성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담보에 따른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등의 담보가치 및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주도하여 설립하여야 하며, 이 때

IV

에도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평가기관의 기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적 금융기관들이 기업성에 의존하여 적극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컴퓨터프로그램 등 첨단기술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가령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도 낡은 기술로 전락할 위험까지 있다. 심사처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면 특허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 평가도 마찬가지다.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담보 대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가 없다. 특허관련 전문 인력으로 심사관이 수적으로 부족한 것은 미래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요즘은 변리사라는 전문직종을 우대해 준다는 소식에 특허청을 떠나는 현상을 제지하고 특허청 인력을 보강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자금확보가 필요하다. 특허청이 자체회계방식으로 운용되므로 특허청자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동나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력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산업재산권 심사처리 기간이 단축되기는 커녕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 산업재산권 심사 및 심판업무의 특수성과 기술혁신의 새로운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또한 요구된다. 특히, 기계, 전자, 화학 등 복합기술과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기술담보제도가 빠른 기간 내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가치평가

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3) 담보대출 보증재원의 확충/신용보증기관 업무 재정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면서 첨단기술의 개발과 그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1997년도 IMF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업이 창업을 했으나 자금의 벽에 부딪혀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유체담보물권을 보유하지 못해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을 감안해 볼 때 유체담보권 위주로 대출하는 은행보다는 기술력의 가치평가액에 따라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기금의 역할은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은행으로 하여금 기술담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사회는 종래의 유체물 담보대출을 특허권 등 무체물 담보대출로 은행의 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기이다. 기술담보제도가 은행권에 정착할 때까지는 기금이 유체담보물이 없고, 기술력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을 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지방에는 각 시 도에 1개소씩 지역신용보증기금이 1998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중앙의 기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하여 보증재원에 충당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방의 지역신용보증 재원은 지방비에서 출연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미약하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나은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다소 보증여력이 좋은 편이다. 경기도의 예를 보면 2001년 12월 현재로 경기신용보증기금은 1,458억원³⁷⁾이 조성되어 있다.

37)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2년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 2002, 217면 참조.

IV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기술가치를 근거로 기술담보대출 보증을 실행하고 있는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뿐이다. 기술을 담보로 한 보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업무의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추가적인 보증재원의 조성이 필요하며 그 규모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재원이 열악한 지역신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7.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1) 기술담보제도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³⁸⁾

기술담보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제정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보완하여 동 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담보제도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지적재산권제도와 관련된 독립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관련기술을 하나의 법률적 객체로 하는 법률 제정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써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담보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 □□지적재산포괄저당법□□ 제정에 관한 검토³⁹⁾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가칭 “지적재산포괄저당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권은 독자

38) 장태중, 전계논문, 152쪽 참조.
39)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2001년 4월호, 42쪽 참조.

적으로 담보설정이 되는 경우보다는 그와 관련된 다른 지적재산권 또는 사업설비와 함께⁴⁰⁾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권리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장재단저당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권리를 일괄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점, 지적재산권은 공장재단에 비하여 재산목록의 작성이 용이하며, 오늘날의 지적재산권의 패키지 경향에도 부응하고 담보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기술적 전문평가기관의 설립⁴¹⁾

고도의 기술을 위한 담보의 적격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평가기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례로 개별 금융기관이 기술의 평가를 담당하면 전문인력 부족과 평가 노하우의 부족으로 높은 비용유발과 평가의 정확성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여 개별 기관의 평가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책자금인 산업기반기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특허권, 기술과 관련하여 권리화된 개별기술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과 기능이 대폭 확대된 일본의 기술평가정보센터(CTA)와 유사한 정부차원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예컨대 특허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의장권, 상표권, 영업상의 노하우 및 사업설비 등을 패키지화 하는 것.
41) 장태중, 전계논문, 154면 참조.

8. 지적재산권담보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참여하에 기술담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도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미회수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되고, 담보채권을 처분할 만한 현물유통시장이 아직은 취약하다.
- 나. 본래의 의미로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는 기술담보제도와는 담보의 취득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다.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담보물의 평가 문제인데 이를 평가하는 전문평가기관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도 소송 등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산업재산권의 사후 관리에도 많은 곤란이 따르고 있다.
- 마. 지적재산권의 매매시장이나 집중관리기관 그리고 담보가치의 전문평가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무체물인 지적재산권을 외면하는 금융기관의 관행 등 지적재산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대인 법제도적 흠결은 정부의 역할 미흡에 그 원인이 있다.

9. 활성화 방안

이와 같이 기술담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단기적 활성화 방안

금융환경 및 기술경쟁의 격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기술담보제도의 인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등 첨단기술^①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첨단 벤처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비하여 현재 조성된 보증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기술담보 대출의 수혜폭이 적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보증재원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중앙의 기술신용보증기금^③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을 지방의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도 취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업무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2)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기술담보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담보제도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종합적인 제도 정비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물론 공장의 사업설비와 함께 권리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① 즉 지적재산권 패키지화 효과가 있는 가치 『지적재산포괄저당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는 전문지식과 고도의 평가기법을 필요로 하므로 개별 금융기관이 기술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부주도로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여 개별 기관의 평가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제 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 끌었던 굴뚝산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IV

줄어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와 인간의 지적능력이 새로운 재산가치로 등장하였으며, 기업활동 및 기업매수에 있어서도 이들 무형자산(지적재산권)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가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무형의 자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M&A⁴²⁾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 개인 또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무체물로 유체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만큼의 가치평가방법이 아직은 미흡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제도 등의 미비점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의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이를 담보로 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금지원관련 현행제도를 보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직접 담보로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담보제도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다. 또 기술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그 기술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고 기술가치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근거로 자금이 대출되는 기술가치평가제도를 기술

42)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시장구조에 대하여는 이경원/이광훈/김민식/최연철/신성문,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 유형과 경제적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1-42, 15쪽 아래 참조.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기술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기술의 평가가치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된 지적재산권 지원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것은 모두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특허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의 한계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적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당면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담보제도가 활성화되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즉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에 있어서는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역할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제 5 장 문화콘텐츠기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모태펀드 현황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각종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내 문화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디지털 교육 및 정보 등 10개 분야) 매출액은 2004년 대비 7.8% 증가한 53조9481억원으로 경제성장률(4.2%)의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국내 문화산업 매출은 2003년 44조1958억원, 2004년 50조601억원에 이어 2005년 53조9481억원을 기록하여 3년간 연평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은 GDP 대비 6.65%의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산업 GDP기여도는 2.38%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문화산업 GDP기여도는 각각 6.56%(2005년 기준), 7.3%(2004년 기준)로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 진흥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정비와 양질의 콘텐츠 창작 활성화, 첨단 문화 기술 전략적 육성 등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7년 5월 30일 문화관광부가 펴낸 ‘2006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2006년 문화산업 분야 예산은 2253억원으로 문화관광부 예산 총액 대비 12.9%,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문화산업예산은 전년대비 342억원 늘어났지만 2007년 예산은 2334억원으로 81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⁴³⁾

43)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5쪽.

2007년에는 영화산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건전게임문화 정착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문화산업 육성보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산업분야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타 부처의 투자와 비교할 때 지원의 폭과 깊이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IT산업이 세계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덕분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수년 내에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⁴⁵⁾

한국벤처투자가 총괄 집행하는 정부 모태펀드가 2007년 3천6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태펀드 조성규모는 1차 사업연도인 2005년 1천700억원에서 2006년 2천150억원으로, 그리고 2007년 3천억원대로 급증하게 되었다. 2008년과 2009년 1천348억원, 1천286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되어 전체 1조원 규모를 형성한 이후 30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다. 2007년에는 2006년에 이어 3차례에 걸쳐 모태펀드 자금을 출자해 벤처캐피탈의 지속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도울 계획이다. 앞서 한국벤처투자는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쳐 3천56억 원(약정 기준)을 출자하였다. 2006년 3차사업에 대한 투자조합 결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차례 출자사업으로 1조740억원에 이르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2005년과 2006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신규 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각각 5천740억원 7천806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태펀드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기여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44)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8쪽.

45)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19쪽.

I

점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 자금의 안정적인 지원 등도 모호하기 위해 2007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의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가동, 벤처기업 우선신용보증제도 폐지, 모태펀드 출자대상 확대, 인수합병(M&A) 관련 조문 정비 등 개편을 추진한다. 2단계로 상반기 중 ‘제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8년 벤처특별법의 전면 개편·보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창투사의 펀드운용과 자금집행을 분리·운영하는 ‘창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를 시행하는 등 벤처캐피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하였다.

모태펀드의 예로는 해외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1억 달러 규모)와 싱가포르의 TIF(13억 달러 규모)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 4월 1일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2009년까지 5년간 정부재정(4,000억원)과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6,00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벤처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벤처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조성하는 펀드가 자금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적합성과 높은 회수율이 생명이다. 따라서 투자 자금의 흐름은 회수율과 회수 규모가 높은 사업에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가 이런 원칙론에만 따른다면 기존의 일반 벤처 펀드와 다를 바가 없다. 전략성과 정책성을 중시해야 할 모태펀드의 운용이 자금관리의 안전성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처럼 극소수의 검증된 곳에만 자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

적인 투자 기관인 창투사 역시 투자 결과를 세금을 낸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용자사업 중단의 문제점과 개선

문화산업기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모태펀드를 통해 우수 업체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지원은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지만 용자지원사업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들도 용자를 받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같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용자사업과 투자사업을 병행하다가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이 재편되면서 영세 콘텐츠업체에 대한 용자지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경우 자체 신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용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차별화는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자금유통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시장원리의 문제점과 개선

원래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 설립 계획은 2005년 3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는 2천7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에 영화진흥금고, 기관 투자 등을 더하여 2010년까지 1조원 모태펀드를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운용계획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 조정을 거쳐 중소기업청 모태펀드로의 통합안을 받아들였다. 문화관광부 출

II

자본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내 문화산업 투자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7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500억 원의 운용 원칙은 ‘시장 논리 존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투자는 돈 벌자고 하는 일이며, 장르별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장르를 위한 모태펀드 내 별도 투자분 배정을 주장해 온 만화업계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입장에 의하면 ‘투자’와 ‘지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 관련 실무를 주관하는 담당 문화산업정책과장은 2006년 1월 18일, “중소기업청이 통합 운용하는 모태펀드 내에 문화산업 투자를 위한 별도 계정은 존재하지만, 여기서 다시 장르별로 비율이나 금액을 나누어 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담당 과장은 “투자는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며, “투자와 지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을 투자해 문화산업 분야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이유는, 국가가 먼저 리스크가 큰 해당 분야 투자에 나서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선례를 만들어 결국 민간 자금의 유입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펀드 운용사에 특별한 운용 방향을 요구하는 대신,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자금을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다. 장르별 투자 편중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이 되는 사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투자의 특성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투자사업은 수익을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취약 장르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유관 기관과 함께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모태펀드에 출자되는 500억 원의 문화관광부 자금은 영상, 음악 분야에 집중해 온 시장 자금의 흐름과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⁴⁶⁾

46) 아이뉴스24 2006년 1월 18일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인센티브의 부여 및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이 제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점은 맞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자의 독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독점의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소지는 있다. 일용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자생력, 경쟁력을 갖는 업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원리를 적용하되 그로 인한 폐단을 경제법원리에 의하여 시정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와 개선

종래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의 형태로 운용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경우보다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고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여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 펀드지원금이 꼭 필요한 문화산업업체에 지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및 지원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펀드의 이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는 기금의 활용과정 및 흐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감독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이므로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 및 상응하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4.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콘텐츠 기금법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그 기반적 전제로서 문화콘텐츠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주는 사회 저변

II

의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는 문화콘텐츠의 복제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성의 확보, 호환성과 표준화작업, 고품질 문화콘텐츠의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과금 및 결제수단의 확보 등 기술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그 제작권자를 보호하여 산업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보호, 불법복제방지, 표준거래약관제, 음란저속물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규제, 사생활보호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점진적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시켜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체계적 재편이 필요하며, 21세기의 기술 환경에 맞는 저작권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호의 적정화를 폐하여야 한다.

5. 문화콘텐츠 담보대출의 활성화

문화콘텐츠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서 이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을 시도하는 많은 콘텐츠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이 종래의 부동산 등 유체물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거래가 부진하여 현실적으로 평가 기법이나 노하우가 축적될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의 담보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각종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단순히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문화콘텐츠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심사처리기간이 길어져서도 안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체물과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래의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에 개량된 콘텐츠 지적재산권이 출현하면 본래의 지적재산권의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개량된 지적재산권 또는 연속하여 제작되는 저작물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 문화콘텐츠산업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관리적력도 중요하다. 특히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관리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바, 지적재산의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을 격려하기 위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내 절차를 수립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사내 또는 사외 아웃소싱을 하여 종합적인 지적재산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저조한 문화콘텐츠아이디어의 실제 사업화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의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관련 산업계로 이전시킴으로써 신문화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자금 지원,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및 문화콘텐츠지적재산권 가치평가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실질적인 거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하드웨어형 문화콘텐츠 기술 혁신 지원거점은 구축되어 있으나, 정부의 예산이 대부분 운영비 지원에 국한되어 문화콘텐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문화사업화 모델을 수립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사업화 관련 지원은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도 영세하며 특히,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 및 콘텐츠의 금융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 6 장 결 론

기금운용평가단이 우리나라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평가를 한 결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별도의 재원이 없고 기금성과도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모태조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신설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 6월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출범시켰으며, (주)한국벤처투자를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모태조합은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모태펀드는 성과가 뛰어난 개별 벤처캐피털을 선정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에 투자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회수를 위해 개별 창업투자회사와 협력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벤처캐피털의 전문성을 차용하는 것이 주요한 의도이다. 출자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펀드들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별펀드들에 대한 정밀실사와 포트폴리오 구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있어 모태펀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계나 창업투자회사는 안정적인 대규모의 자금풀을 통해 펀드결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분야에 모태펀드 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모태펀드가 자금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적합성과 높은 회수율이 생명이다. 따라서 투자 자금의 흐름은 회수율과 회수 규모가 높은 사업에 쏠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가 이런 원칙론에만 따른다면 기존의 일반 벤처 펀드와 다를 바가 없다. 전략성과 정책성을 중시해야 할 모태펀드의 운용이 자금관리의 안전성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처럼

극소수의 검증된 곳에만 자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기금법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문화콘텐츠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저변이 마련되어야 하고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그 가치평가를 통한 담보대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디지털환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에 새로이 문화지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작금에는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 잡는 변화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얼마든지 확대재생산이 가능하고, 무한한 공유와 활용이 또한 가능한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고 성찰력 있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는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산업기업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경영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즉 공정한 문화콘텐츠지식과 정보활용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문화산업기업에게 요청되고 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향상, 제도 개선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IT강국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2년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
내서, 2002

김홍주 기민호 송근장 이철남, 특허담보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활용,
주간기술동향, 1997

문화관광부, 2006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결산보고서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7.5.

박동규,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6

이경원/이광훈/김민식/최연철/신성문,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
유형과 경제적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1-42

이원태, 기술의 가치평가기법-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장태중, 개별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병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5.31.

한명호, 프로그램지적재산권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판례월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의 금융구조 현황 조사 분석연구, 2005.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창업지원방안 및 직집화 특성연구
보고서, 정책연구 02-0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조세 및 금융지원 방안 연구, 정책
연구 02-0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에 따른 합리적 수익배분
조사, 2006.1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년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총괄편,
2007.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2007.4.